#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478 제출년월일 : 2022. 3.

제 출 자:평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평창군이 설치한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11.07.15. 조례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며,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및 면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과제 선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정비 요청
- 나.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을 도모함. (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우)
- 다. 보훈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해 「평창군 효석문학의숲 관리 및 운 영 조례」제8조(입장료 감면) 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1) 입법예고(2021.12.31.~2022.1.20.(20일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###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8조제1항 제1호 중 "주민등록이 되어 있는"을 "주소를 두고 있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전액 면제한다.
- 1.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
- 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3.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
- 4. 만 6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, 다자녀 가정
- 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- 6. 효석문학의 숲 내에 있는 충주집을 이용하는 사람
- 7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,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
- 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따라 등록된 국가유 공자와 그 가족
- 9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
- 10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 공자
- 11. 「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- 12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
- 13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- 1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
- 15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포로 가족
- 16.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입장료 감면) ① 다음 각 호	제8조(입장료 감면) ①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에는 제6조에 따른 입장료를 5	
0% 감면할 수 있다.	<u>.</u>
1. 평창군(이하"군"이라 한다)	1
에 <u>주민등록이 되어 있는</u> 사	<u>주소를 두고 있는</u>
람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	
른 입장료를 전액 <u>감면할 수 있</u>	<u>면제한다.</u>
<u>다.</u>	
1. ·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단순통행자 및 행사에 참여	3.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
하는 사람	
4. 만 6세 이하 어린이와 <u>주민등</u>	4
록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	
의 노인	<u>, 다자녀 가정</u>
5.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	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
	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
	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
	보호자를 포함한다)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

법률」에 따른 한국숲사랑청 소년단의 단원,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<신 설> 원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<신 설> 9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」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<신 설> 10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<신 설> 11. 「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 자 <신 설> 12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 공자와 그의 배우자 <신 설> 13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<신 설> 1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
	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
	그 가족
<u>&lt;신 설&gt;</u>	15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
	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	등록포로 및 포로 가족
<u>7</u> . (생 략)	<u>16</u> 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### 관 련 법 령 발췌

- 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- 제67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 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- □ 국가보훈기본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- □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
제9조의7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)

-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(이하 "이용료"라 한다)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·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. <개정 2016. 6. 21., 2017. 12. 29., 2018. 8. 14., 2018. 12. 31., 2020. 6. 2.>
  - 1. 국빈 및 그 수행원
  - 2.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
  - 3.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
- 4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- 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 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
- 7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(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·2급·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와 그 배우자 및 유족
- 8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 18민주유공자(장해등급 1급·2급·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 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와 그 배우자 및 유족
- 9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10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(상이등급 1급·2급·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와 그 배우자 및 유족
- 10의2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 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- 10의3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 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10의4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 1항에 따른 의상자(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

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, 의사자유족, 의상 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
- 1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12.「산림보호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
- 13.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
  - 14.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・군・구에 거주하는 사람
  - 15.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
  - 16.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 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 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 다.[본조신설 2015. 12. 31.]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○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산림과장 이 성 모
연락처	(033) 330 - 2450